이천시 이륜차 관리 규정

소관부서 : 회계과

개정 1999 · 2 · 26 훈령 제92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행정장비중 이륜차의 관리기 준을 정하여 물품 운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)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이륜차는 각 실·과·소, 읍·면·동에서 행정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품대장에 등재된 이륜차를 말한다. 〈개 정 99·2·26〉
- 제3조(이륜차의 관리) 각 실·과·소, 읍·면·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는 본청(농업기술센터, 보건소 포함)은 해당 담당주사, 읍·면·동은 총무담당주사,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. 〈개정 99·2·26〉
 - 1. 행정수행 목적외 타 목적에 사용함은 엄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2. 일과시간 후에는 이륜차를 사용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일 당직사령에게 승인을 얻고 사 용할 수 있으며 당직사 령은 그 내용을 당직일지에 기재하고 이를 수시 감독 확인해야 한다.
- 제4조(이륜차 차고관리)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이륜차고를 관리한다.
 - 1. 차고 관리자는 별지 제1,2호서식에 의한 "이륜차 점검부"와 "차고사용 기록부"를 비치 활용해야 한다.
 - 2. 차고 사용자는 사용후 개폐 여부를 확인시킨후 열쇄를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.
- 제5조(운행중 사용) 이륜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륜차 운행증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- 1. 이륜차 운행증없이는 이륜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륜차 운행증은 해당 실, 과, 소장이 발급한다.

이천시 이륜차 관리 규정

- 2. 수위실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"이륜차 운행기록부"를 비치하여 이 륜차를 사용자에게 운행증을 회수 이를 확인후 기록 관리해야 하며 사용 자가 귀청 시에는 이를 확인하고 관계부책을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인수인계) 당숙직자는 당숙직 근무개시 10분전까지 다음 사항을 인수 확인하고 당숙직 근무종료시 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
 - 1. 이륜차 점검부 및 차고사용 기록부(회계과)
 - 2. 이륜차 운행 기록부(수위실)
- 제7조(책임)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일체의 사고(훼손, 망실)는 이륜차 보유 담당주사가 책임을 진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1999·2·26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별지 제1호서식〕

이 륜 차 점 검 부

순번	고유번호	계별	차체번호	엔진번호	점검사항	확인자인	비고

[별지 제2호서식]

차 고 사 용 기 록 부

연번	사용일시	소속	직급	성명	이륜차고유번호	용도	확인자인	비고

[별지 제3호서식]

\cap	류	τ ι	유	해	ᄌ
ΟI		사	-	्रा	=

No.

이륜차 소속 :

이륜차 고유번호 :

이륜차 사용자 :직급:성명 :이륜차운행구간 :에서까지

이륜차 운행시간 : 월 일 시부터 시 까지

이륜차 운행목적 :

위와 같이 이륜차 운행을 허가함.

실·과·소장 (인)

[별지 제4호서식]

이 륜 차 운 행 기 록 부

No. 출고일시	사	용	자	이 륜 차	운행	운행	운행	귀청	확인	
	E E	소 속	직 급	성 명	고유번호	목적	구간	시간	시간	자인